

Asian Nursing Research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 2014년 12월

제 1조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간호과학회(이하 본법인) 정관 제 26조 1항 에 따라 구성된 ANR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위원회는 30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1. ANR 편집위원 조직도
 - (1) 편집위원장 1인
 - (2) 부편집위원장 2인
 - (3) 실행 편집위원
 - (4) 통계 편집위원
 - (5) International Editorial Board

제 3조 제 3조 ANR 편집위원장은 한국간호과학회 회장과 차기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부편집위원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1. ANR 편집위원장 자격조건
 - (1) 한국간호과학회 정회원
 - (2) 국내외 저명학술지 편집위원 경험자
 - (3) 연구출판윤리관련 징계 받은 경험이 없는 자
2. ANR 편집위원 자격조건
 - (1) ANR 심사위원 경험자 우선
 - (2) 국내외 저명 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자
 - (3) 연구출판윤리관련 징계 받은 경험이 없는 자

제 4조 위원회는 ANR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실행이사회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1) 편집에 관한 사항
 - (2) 게재료의 결정
 2. 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 (1) 편집위원 워크숍
 - (2) 편집위원-심사위원 합동 워크숍
 3. Asian Nursing Research의 질 관리
 - (1) 한국연구재단 등재 관리
 - (2) 대한의편집(KoreaMed) 등재 관리
 - (3) PubMed Index Medicus 등재 관리
 - (4) SCI 등재 관리
 4. 관련 규정의 검토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행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 제 5조 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1. (자격)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지견을 갖춘 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절차) 논문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은 편집위원이나 회원학회장의 추천을 받은 피 추천인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다음 실행이사회에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특별 심사위원)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7.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9년 4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12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4년 12월부터 시행한다.

Asian Nursing Research 논문심사 규정

개정 : 2014년 12월

1. 사단법인 한국간호과학회 정관 제 26조 및 영문 편집위원회 규정 제6조 7항에 따라 Asian Nursing Research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3. 간호학 석·박사 학위논문도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4. 투고자격과 투고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5.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부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6.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7. 논문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종설, 개념분석 및 Q-methodology에 따른 평가서 기준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8.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논문이 투고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논문에 대해 스크린하고 부편집위원장들에게 논문을 배정한다. (단, 부편집위원장과 이해관계가 없도록 배정한다.)
 - (2) 부편집위원장은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한 3명의 심사위원에게 온라인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 (3) 심사위원은 2-4주 이내에 온라인으로 논문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평가지, 본문수정사항, 수정보완사항을 기록한다.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 (4) 심사위원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한다.
 - (5)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9.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 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 및 게재불가능으로 판정한다.
 - (1) 게재가능 판정: 교정 없이 채택한다.
 - (2) 수정 후 게재 가능 판정: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 (3) 수정 후 재심 판정: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10. 심사위원 중 2명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다.
11.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12. 수정한 논문은 2주 이내에 수정한 논문과 수정사항을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13. 최종 수정 논문이 제출되면 편집위원장이 선임한 편집위원이 수정여부를 검독하여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거나 투고규정에 맞지 않으면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1) 선임된 편집위원은 판정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판정을 논의할 수 있다.
14.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5. 투고자가 수정한 원고를 3개월 이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회수로 간주한다.
16. 상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9년 4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2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4년 12월부터 시행한다.